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2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신복자,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성배,
이원형, 이은림, 이종환,
이희원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어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노동복지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동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마련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및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기능

2.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금융·법률 등에 관한 상담 제공 기능
3.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무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함으로써 휴식 및 복지공간 등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기추진¹⁾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다만, 확대시행 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으며 쉼터 운영현황을 참고로 제시 (참고자료 :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시는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및 운영 사업을 **기추진 중** ※ 참고자료 : 2024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발췌

① (무인쉼터)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 시범 도입

- (장소선정) 인근 상권형성, 배달수요, 접근성 등 고려

- (운영체계) 市-사업비지원, 區-설치운영, 서울교통공사-공간제공

② (민간자원활용 쉼터) 시내 편의점 등 민간자원 활용하여 운영(혹한기-혹서기)

- 민간시설을 활용한 쉼터의 접근성 및 이용률 향상으로 효과성 제고

- '편의점 기업 및 배달플랫폼 기업'과 재원 마련,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쿠폰 제공

③ (찾아가는 쉼터) 혹한기-혹서기 기간 중 이동노동자 밀집지역 중심 운영

- 캠핑카를 활용, 운영 정례화(혹한기 1회→혹한기-혹서기 2회)

(20여곳 시범도입('22. 11~12월) ⇨ **30여곳 본격 운영('23. 11월 ~ '24. 2월))**

- 야외활동에 필요한 장갑, 핫팩, 쿨토시 등 방한·냉방용품 제공

붙임 1.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현황 ※ 서울시 관련부서 제공자료

□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 휴(休)서울이동노동자 쉼터 5개소 운영

구분	명 칭	개소	위 치	면적	'24년 1~9월 이용자
1	서초쉼터	'16.3.	서초구 사평대로 354(서초동)	226㎡	11,647명
2	북창쉼터	'17.6.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333㎡	11,958명
3	합정쉼터	'17.11.	마포구 양화로 73(서교동)	252㎡	19,345명
4	상암쉼터	'18.5.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250㎡	4,753명
5	녹번쉼터	'19.7.	은평구 통일로 680(녹번동)	181㎡	3,426명
합 계					51,129명

○ 자치구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6개소)

구분	명 칭	개소	위 치	면적	'24년 1~9월 이용자
1	서대문쉼터	'22. 8.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견인차량보관소	40㎡	2,815명
2	강남쉼터 1호점	'23. 5	강남구 역삼로 160 (강남취창업허브센터 후문)	5.1㎡	14,688명
3	강남쉼터 2호점	'23. 5.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이면도로 공영주차장)	10㎡	
4	도봉쉼터	'23. 9.	도봉로170길 2 도봉역 하부공간 (구립노동센터 내)	42㎡	2,328명
5	영등포쉼터	'23. 10.	버드나루로23길 4 1층, 4층 (구립노동센터 내)	19.36㎡	6,996명
6	중랑쉼터	'23. 11.	양원역로 92 LH서울양원1단지 104동 상가 (구립노동센터 내)	18.9㎡	1,220명
합 계					28,047명

※ 자치구 자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 현황

구분	개소	주요이용자	위 치	면적
성동쉼터	'23. 7.11.	배달기사 등 (10시~19시)	성수일로 111, 212호 (성수동 안심상가 내)	50.07㎡
중랑쉼터	'23. 7.20.	배달기사 등 (9시~21시)	중랑역로4길 29 (중랑구사회적경제센터 1층)	21㎡